

차시명 : 퇴직연금제도 교육 - 9차시

S#1.

퇴직연금제도 교육

S#2.

1.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

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내용: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퇴직연금제도란?

- 사용자(회사)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근로자가 퇴직할 때,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

- 퇴직연금제도는 DB(확정급여)형 제도와 DC(확정기여)형 제도로 나뉘며,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.

※ 근로자 대표란?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.

- IRP(개인형퇴직연금제도)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력으로 가입하거나,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·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.

S#3.

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①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합니다.

② 퇴직연금규약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.

이때 지방노동관서가 퇴직연금규약을 심사한 뒤 수리됐음을 통보합니다.

③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.

④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합니다.

⑤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을 수령한 뒤 적립금을 보관합니다.

⑥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합니다.

⑦ 운용지시를 이행합니다.

⑧ 가입자에 대해 교육합니다.

⑨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.

⑩ 퇴직연금급여를 수령합니다.

S#4.

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제도별 특징

① DB형 퇴직연금제도

·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.

·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.

*여기서 퇴직급여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.

S#.5

② DC형 퇴직연금제도

·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고,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
· 근로자가 개인자금을 추가로 DC계좌에 납입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③급여종류별 수급 요건

- 급여 종류

연금: 연금 수급 시점 연령 55세 이상,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

일시금: 연금 수급 요건 미 충족 시,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

S#.6

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임금이란?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 「근로기준법 제2조제5항」

임금 총액 판단 기준(예시)

·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항목

① 지급 조건, 지급 시기, 지급률 등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는 경우

②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인 경우

·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

- ① 일시적·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(해외파견수당 등)
- ②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, 사업주의 포상적·은혜적 급부(경조사비 등)
- ③ 현물,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것(급식, 교통비 등)

S#.7

2. 퇴직연금제도 운영 과정

S#.8

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- DB형: 재정검증

-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.
 -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,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 -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5/100에 미달한 경우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후 60일 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*를 작성해 근로자 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.
- *적립금 부족을 3년 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
-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S#.9

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- DC형: 지연이자 납입

-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*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.
 -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.
- 다만, 천재지변, 사업장의 파산 및 회생, 타 법령상의 제약, 퇴직급여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을 지영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.

S#.10

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

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활용 가능

· 퇴직급여는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,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S#.11

- 퇴직연금 담보대출

다음은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유입니다. 「근퇴법시행령 제2조」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,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
-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
-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,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,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-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S#.12

- 퇴직연금 중도인출

퇴직금의 중도인출은 담보대출 사유와 비슷하나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등의 명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「근퇴법시행령 제14조」

- 중도인출 신청방법

-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한 서류 등의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때, 중도인출 및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 소득세의 세금 계산, 중도인출 시기 운용 중인 상품의 매도 처리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S#.13

가입자 교육

- 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다만, IRP(개인형퇴직연금)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S#.14

가입자 교육 내용 및 방법입니다.

가입자 교육 사항은 제도일반 교육과 제도 유형별 교육으로 구분됩니다.

공통사항: 제도 일반 교육 및 방법

- 교육 내용: 급여종류에 관한 사항, 지급 요건,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/ 담보대출, 중도인출,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/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/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 / 가입자의 소득, 자산 부채,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및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.
- 교육 방법: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.

S#.15

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경우 교육 내용

- 교육 내용: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/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/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/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사항 / 그밖에 적립금 운용현황, 운용 목표 증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.
- 교육 방법
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 발송 /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, 강의 등 대면 교육 실시 /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실시 /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해야 하며,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
S#.16

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교육 내용 및 방법

-교육 내용: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,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/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표준 규약 및 표준 계약서에 관한 사항 / 분산 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행하는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/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 구조, 매도 기준가,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

- 교육 방법

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 발송 /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, 강의 등 대면 교육 실시 /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하며,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
S#.17

3. 퇴직연금 지급 과정

S#.18

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퇴직 시(이직 시) 퇴직급여 수령 방법(IRP이전)

·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계정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, IRP 계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.

·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,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IRP 예외 사유

-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
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
-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

S#.19

IRP 이전 방법 및 절차

- 가입자는 퇴직 전, 금융기관에서 IRP계정을 개설합니다.
- 가입자는 회사에 본인이 개설한 IRP계정을 통보합니다.
-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(DB, DC 사업자)에게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퇴직급여

를 지급하도록 합니다.

- 회사의 지급조치가 없는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S#.20

IRP 이전 시 효과

-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,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납부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.
- IRP 운용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- 가입 이후 55세가 넘으면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S#.21

4. 퇴직연금제도 과세 체계

S#.22

퇴직연금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소득원천 적립단계, 운용단계, 수령단계 순입니다.

- 적립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- 운용단계에서는 과세이연 가능합니다.
- 수령단계에서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
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(퇴직소득세의 70% 분리과세)가 발생하며 연금소득세 1,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 과세, 1,2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내야 합니다.

S#.23

① DC, IRP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제혜택

-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(DC, IRP)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)인 근로자는 공제율 16.5%, 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13.2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S#.24

②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30%의 세액 경감

·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,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%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. 또한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
S#.25

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중단 시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*폐업,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.

·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조치 사항

-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적립금 현황, 제도 폐지 사유 및 미납 부담금 처리 방안을 기재해 지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또한 회사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현황, 미납 부담금의 해소 방안(DC형), 중간 정산 대상 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
-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·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사용자,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본적 업무

- 제도 중단 시 사용자는 중단 사유, 재개 시 일정, 미납부담금 처리 방안(DC형) 등을 가입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.

-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, 급여 지급, 적립금 운용 등 법령상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.

